

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1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7. .

제출자 : 충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인력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정원책정기준과 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연구직과 지도직을 복수책정
 - 가.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[별표 2]
 - 지도직·연구직 : 지도·연구관 10%, 지도·연구사 90%
 - 나.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 [별표 3]
 - 지도직·연구직 : 지도·연구관 4명, 지도·연구사 37명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- (1)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 - (3)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 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충주시 조례 제 호

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충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

1. 일반직 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 율	1% 이내	7% 이내	27% 이내	31% 이내	25% 이내	9% 이상

2. 기능직 공무원

구 分	6급	7급	8급	9급
비 율	8% 이내	26% 이내	30% 이내	36% 이상

3. 연구·지도직 공무원

구 分	연 구 직		지도·연구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·연구관	지도·연구사
비 율	-	-	10% 이내	90% 이상

4. 별정직 공무원

구 分	5급상당 이상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 율	20% 이내	40% 이내	20% 이내	20% 이내	-

* 비 고 :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 · 직급별 정원표 (제3조 관련)

직종·직급별	기관별 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기관		사업소	읍면동
				보건소	농업기술센터		
총 계	1,287				—		
정무직 계	1				—		
시 장	1	1					
일반직 계	1,033				—		
	3 급	1	1				
	4 급	7	4	1	1	1	
	5 급	62	24	1	3	9	25
	6급 이하 계	963					
일반·별정 계	1				—		
	5급 상당	1		1			
	6급 상당 이하 계	—			—		
별정직 계	4				—		
	5급 상당	—			—		
	6급 상당 이하 계	4			—		
연구직 계	—				—		
	연 구 관	—					
	연 구 사	—			—		
지도·연구직 계	41				—		
	지도·연구관	4			4		
	지도·연구사	37			—		
기능직 계	207				—		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일부개정 2012. 4. 10 대통령령 23712호]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8.7.3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그 조사·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, 기관별, 직급별,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 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
2. 유사·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,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④ 시·도지사는 해당 시·도와 관할 시·군·구간 또는 관할 시·군·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 체계를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8.7.3>